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8537호)」이 2021.11.30. 개정되어 2022.6.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대학”**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대학의 학칙은 대학의**”를 “**대학교의 학칙은 대학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은**”을 “**대학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한다.

제8조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을**”을 “**대학교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을**”을 “**대학교를**”로 한다.

제14조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을”을 “대학교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장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⑤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한국농수산물대학</u> 설치법 시행령	<u>한국농수산물대학교</u>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 <u>한국농수산물대학 설치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한국농수산물대학교 설치법</u> 」----- -----.
제3조(학생선발방법) ① <u>한국농수산물대학</u> (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은 「 <u>한국농수산물대학 설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입학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3조(학생선발방법) ① <u>한국농수산물대학교</u> (이하 “대학교”----- ----- 「 <u>한국농수산물대학교 설치법</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학</u> 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 <u>대학교</u> ----- -----.
제4조(학칙) ① <u>대학</u> 의 학칙은 <u>대학</u> 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학칙) ① <u>대학교</u> 의 학칙은 <u>대학교</u> 의 장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과정 등) ① <u>대학</u> 의 정규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① <u>대학교</u> ----- -----.

② 대학은 농어업인과 유관기관·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기숙사생활) 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 ⑤ 삭제

② 대학교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① -----
----- 대학교-----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숙사생활) 대학교-----

-----.

제10조(총장 등) ① 대학교-----
-----.

② -----

----- 대학교를 -----.

⑥ <u>대학</u> 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u>대학교</u> ----- ----- ----- ----- ----- -----.
제11조(교원 등) ① <u>대학</u> 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제11조(교원 등) ① <u>대학교</u>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① ~ ④ (생 략)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대학</u> 을 졸업한 사람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 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u>대학교</u> 를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비 부담) <u>대학</u>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4조(경비 부담) <u>대학교</u> ----- ----- -----.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u>대학</u> 을 졸업한 자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 ----- <u>대학교</u> 를 -----

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u>대학</u> 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 ----- <u>대학교</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장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⑤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연 락 처	(044) 201 - 1535